

#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活動狀況 報告

(中間結果報告書)

本報告書는 '93.9.13日 忠淸北道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가  
構成된 후 '94.6.30까지 活動한 狀況의 中間結果 報告임.

忠淸北道議會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 目 次

I. 方 針 .....	549
II. 댐의 基本現況 .....	550
III. 댐 造成에 따른 環境變化 .....	550
1. 住民의 減少	
2. 氣 象 變 化(안개일수, 日照時間)	
IV.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運營 .....	552
1. 댐特委 主要活動狀況	
2. 住民不便, 建議事項 處理結果	
3. 向後 推進計劃	
V. 行政事項 .....	556
※ 參考資料 .....	557
1. 댐周邊地域住民 不便, 建議事項	
2. 中央關係部署 訪問資料	
3. 댐特委 活動日誌	
4. 資源稅 推進狀況	
5. 國會議員과의 懇談會 資料	
6. 댐周邊地域住民의 不便 및 建議事項改善方案	

#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活動狀況報告

- 國家開發事業으로 建設된 忠州·大清댐으로 因하여 首都圈의 生活用水, 電力 供給 等 國家産業이나 經濟發展에는 크게 寄與하였지만,
- 댐 周邊地域의 自然環境 變化和 各種 法規에 의한 法規制 措置로 隣近地域住民 에게는 生活의 큰 不便과 物質的인 피해와 精神的 苦痛을 주고 있음으로,
- 그간의 住民 不便事項과 建議事項을 폭넓게 收斂하고 심도있게 分析 檢討하여 댐周邊 地域住民들의 立場에서 解決方案을 찾아 改善해 나가는데 目的이 있음

## I. 方 針

1.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에서는 大清, 忠州댐 建設以後 住民의 不便事項과 建議事項을 正確히 把握하기 위하여 現地踏査, 住民과의 懇談會, 專門家招聘 討論會 等を 開催한다.
2. 收斂된 不便, 建議事項을 심도있게 檢討하기 위하여 道 關係部署의 係長級으로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支援班을 編成 運營한다.
3.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支援班에서는 地域住民의 立場에서 關係法을 檢討하고 關係 部署間 中央部處와의 協議를 통하여 可能한 한 모든 解決方案을 모색한다.
4.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에서는 事業別 細部改善方案을 綜合 整理하여 本會議에 報告 하고 道 關係部署와 共助體制를 確立한다.
5. 事業別 細部改善方案의 實現을 위하여 中央關聯部處를 訪問 建議하고 忠北出身 國會議員과의 懇談會 等を 통하여 道民의 한 목소리로 結집시킨다.
6. 事業別 細部改善方案은 實踐可能하고 순쉬운 것부터 段階的으로 推進하고 그 結果를 綜合하여 12月中 本會議에 報告하고 댐特委活動은 終結한다.

## II. 댐의 基本現況

區 分	忠 州 댐	大 清 댐
總 事 業 費	5,475億 원	1,445億 원
補 償 金	1,421億 원	472億 원
工 事 期 間	'78. 6 ~ '85. 10	'75. 3 ~ '80. 12
水 沒 家 口	7,150世帶	4,075世帶
댐  높 이	97.5M	72M
댐  길 이	464M	495M
홍 수 위	E L 145M	E L 80M
만 수 위	E L 141M	E L 76.5M
저 수 면 積	97km <sup>2</sup>	72.8km <sup>2</sup>
호 수 길 이	68km	86km
저 수 량	2,750 百萬 m <sup>3</sup>	1,490 百萬 m <sup>3</sup>
용 수 공 급	3,380百萬 m <sup>3</sup>	1,649百萬 m <sup>3</sup>
발 전 용 량	40萬 kW	9萬 kW
댐  형 식	콘크리트 중력식댐	콘크리트 중력식 및 석괴식 댐의 複合形

## III. 댐造成에 따른 環境變化

### 1. 住民의 減少

年度 市郡	1988			1989			1990			1991		1992	
	인구	인구	%	인구	인구	%	인구	인구	%	인구	인구	%	
全國	428,000	423,000	△ 0.9	428,690	423,000	1.1	432,683	423,000	0.9	415,032	423,000	2.8	
道													
清原	1,310	1,272	△ 8.6	1,146	1,272	9.9	1,205	1,272	5.1	1,200	1,272	0.4	
報恩	600	563	△ 6.1	522	563	7.2	555	563	6.5	535	563	3.6	
沃川	756	733	△ 3.0	707	733	3.5	699	733	1.1	690	733	1.2	
中原	738	699	△ 5.2	651	699	6.8	706	699	8.4	685	699	2.9	
堤川	426	400	△ 6.1	378	400	5.5	387	400	2.3	369	400	4.6	
丹陽	549	522	△ 4.9	496	522	4.9	501	522	1.0	490	522	2.1	

## 2. 氣象變化

### 가. 안개일수

댐 以前 (80~84年)							1985年	댐 以後 (86~90年)					
52.2日							81日	84.6日 (+32.4일 많음)					
區分	80	81	82	83	84	平均		86	87	88	89	90	平均
1	4	3	-	5	2	2.8	2	11	1	4	11	8	7
2	8	1	3	2	-	2.8	2	6	3	-	2	6	3.4
3	4	1	2	2	1	2	2	2	2	-	2	6	2.4
4	3	1	1	2	1	1.6	6	1	3	3	3	6	3.2
5	3	2	1	4	1	2.2	7	6	3	3	4	7	4.6
6	2	1	-	3	3	1.8	5	3	3	4	2	5	3.4
7	2	0	-	5	2	1.8	9	3	5	-	4	7	3.8
8	-	3	5	3	3	2.8	12	11	9	10	5	11	9.2
9	9	12	9	9	14	10.8	4	17	15	13	12	8	19.7
10	10	5	12	14	17	11.6	16	17	18	12	8	17	10.8
11	11	5	8	11	12	9.4	9	11	6	12	8	17	10.8
12	11	3	4	-	6	4.8	7	7	7	8	9	9	7.6
計	57	37	45	80	62	52.2	81	95	75	67	78	108	84.6

※ 9~11月까지 안개긴 日數가 많았음.

### 나. 일조시간

댐 以前 (80~84年)		1985年	댐 以後 (86~90年)		1985年		, 댐 以後 (86~90年)	
2447.6時間		2293.6時間	2381.7時間					
1	175.2	192.5	162	7	195.2	203.7	177.3	
2	189.4	146.8	170.6	8	202.3	224.3	223.4	
3	221.5	218.8	207.7	9	206.1	206.1	203.8	
4	231.7	221.7	248.0	10	201.5	201.5	198.2	
5	263.6	246.2	255.7	11	152.5	152.2	156.2	
6	247.3	238.7	277.8	12	171.6	171.6	151.1	

※ 댐 造成 前보다 年平均 65.9時間 不足

## IV.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運營

### 1. 댐特委 主要活動狀況

#### □ 住民輿論 收斂 및 現地踏査

- 期 間 : '93. 10. 5 ~ 10. 7 (3日間)
  - 對象市郡 : 댐關聯 7個 市郡
  - 場 所 : 該當市郡 會議室
  - 參 席 者 : 201名 (市郡關係者, 市郡議員, 地域住民 等)
  - 運營方法 : 忠州, 大清댐別 小委員會 構成
  - 活動內容 : 댐關聯 不便, 建議事項 聽取 및 現地踏査
- ※ 不便·建議事項 82件 (忠州댐 36, 大清댐 46)

#### □ 댐關聯 市郡議員과의 懇談會

- 日 時 : '93. 10. 14 14:00
- 場 所 : 大會議室
- 參 席 者 : 34名
- 內 容 : 參席의원들로 부터 地域開發 沮害要因 等, 現實的으로 改善해야 할 事業建議 收斂.

□ 水資源公社 關係官과의 懇談會

- 日 時 : '93. 10. 19 11:00
- 場 所 : 水資源公社
- 參 席 者 : 15名 (담特委 委員, 水資源公社 本部長, 運營處長,  
地域經濟研究所 職員, 道建設都市局長, 關係公務員 等)
- 內 容 : 담周邊地域 住民의 生活實態와 被害狀況을 소상히 說明하고  
담周邊地域의 各種法制法令의 改正과 實質的인 受惠方案 및  
實踐 促求

□ 담關聯 懸案 大討論會

- 日 時 : '93. 10. 21
- 場 所 : 道廳會議室
- 參 席 者 : 250名
- 討 論 者 : 4名 (議員 2, 教授 2)
  - 大清담 小委員長 옥봉호
  - 忠州담 小委員長 김진학
  - 忠大 水資源 水質研究센터 所長 심순보 教授
  - 建大 社會政策研究所長 이백훈 教授

□ 委員會 支援班 編成 : 都市計劃課長 外 係長15名

□ 담關聯業務 報告會 및 對策班과 協議會 : 6 回

□ 委員會 活動狀況 關聯機關 送付 : 國會議員, 市郡議會議長 23名

□ 담周邊地域 包括事業費 確保 宿願 事業 推進 : 10億원

計	清 原	報 恩	沃 川	中 原	堤 川	丹 陽
百萬元 1,000	150	150	200	150	200	150

## 2. 沿周邊住民 不便 吳 建議事項 處理結果

### □ 市 郡 別

計	共通	清 原	報 恩	沃 川	忠 州	中 原	堤 川	丹陽
79件	23	8	10	8	5	10	8	7

### □ 機 關 別

計	內務部	建設部	環境處	農林水產部	水產廳	水資源公社	其 他
79件	5	19	12	3	4	14	22

### □ 處 理 結 果

計	解 決	推 進 中	中 央 建 議	檢 討 中	追 後 計 劃	不 可
79 件	4	26	23	5	8	13
比率 (100%)	5 %	33	29	6	10	17



### 3. 向後 推進計劃

#### □ 中央關係部處 訪問

- 機 關 : 主要建議事項 處理部處
- 時 期 : 8月中(細部日字 追後決定)
- 訪問議員 :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委員中 追後 委員會에서 決定
- 建議事項 : 別 添

#### □ 忠北出身 國會議員과의 懇談會 開催

- 日 時 : 8月中
- 場 所 : 追後決定
- 參 席 : 國會議員과 댐特委 委員
- 懇談會 內容 : 法令改正 및 支援 等 建議

#### □ 對政府 建議 : 10月中

- 建議機關 : 國務總理, 國會, 政黨 等
  - 建議方法 : 댐特委에서 建議案 作成 本會議 議決
  - 內 容 : 댐周邊地域의 各種 規制 法令改正 및 被害住民의 財政支援 等
- ※ 對政府建議(案) 追後作成

#### □ 建議事項 推進黨業費 確保

- 推進黨業 : 時急히 改善해야 함. 事業中 小規模事業
- 豫算確保 : '95豫算
- 確保方案 : 9月中 對象事業 및 所要豫算을 確定  
'95 豫算編成時 反映

## V 行政事項

### □ '95 推進事業計劃 樹立

-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 支援班에서는 既 提出된 댐周邊 住民의 不便, 建議事項 中 時急히 改善해야 할 事業을 選定하고 年次別 事業計劃을 9月中 樹立 報告

### □ 推進狀況 報告

- 既 報告된 댐周邊 地域住民의 不便, 建議事項中 中央建議, 檢討中 等 推進中인 事項에 대한 推進結果를 每月 댐關聯對策特別委員會에 出席 報告

## 參 考 資 料

1. 댐周邊 地域住民 不便, 建議事項
2. 中央關係部處 訪問資料
3. 댐特委 活動日誌
4. 資源稅 新設推進 狀況
5. 國會議員과의 懇談會 資料
6. 댐周邊 地域住民 不便, 建議事項에 대한 改善方案

# 1. 댐 周邊地域 住民 不便, 建議事項

區 分	建 議 事 項	處 理 部 署		處 理 結 果
		中 央	道	
共 通	23 件			
	1. 上水道保護區域 指定에 따른 地域開發 制限 規制緩和	환 경 처	도시개발과	추 진 중
	2. 自然環境 保全地域 指定에 따른 各種 規制緩和	건 설 부	환경관리과	중양건의
	3. 대청호上水源 水質保全 特別對策 地域指定 規制緩和	환 경 처	환경관리과	중양건의
	4. 댐 周邊 地域支援金 上向調整 (發展販賣收益金의 0.5% → 5%)	건 설 부	치 수 과	추 진 중
	5. 環境基礎施設 擴充에 따른 分擔 金 國庫支援 擴大	환 경 처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중양건의
	6. 안개 等 氣象變化로 因한 農作物 減少 被害 補償	농림수산부	농 산 과	불 가
	7. 댐 周邊 休·廢耕 農耕地 被害 補償	수자원공사	지역계획과	불 가
	8. 浮遊物 處理 一元化를 위한 關聯 法 改正 等 根本對策 講究	환 경 처 건 설 부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과	중양건의
	9. 가두리 養殖業 許可 期間 滿了後 對策 講究	수 산 청	축 산 과	중양건의
	10. 魚類 産卵期(4~6月) 댐 水位 適正 維持	-	축 산 과	추 진 중
	11. 水資源稅 新設	내 무 부	세 정 과	중양건의
	12. 國土利用計劃變更 早速承認	건 설 부	지역계획과	추 진 중

13. 댐 遊·休地 占用料 免除	수자원공사	치 수 과	추진 중 (건의)
14. 표고栽培事業 等 住民所得事業 支援 擴大	산림청	원예유통과 산림복지과	추진 중
15. 水沒民에 대한 獎學金 支援	수자원공사	치 수 과	추진 중
16. 댐 周邊 쓰레기, 人命救助, 산불 防止, 人員動員用 多目的 船舶 建造 支援	수자원공사	치 수 과	검토 중
17. 環境基礎施設(運營費)의 負擔이 過重함으로 受惠者 負擔 措置	환경처	환경관리과	추진 중
18. 既 融資된 國民住宅資金을 農村 住宅 融資로 償還方法 轉換	건설부	주택과	해결
19. 댐 關聯法이 水資源公社에 有利 하게 되어 있으므로 地自體에 有利하도록 制度的인 問題 解決	건설부	치 수 과	추진 중
20. 環境問題가 深刻한데 重金屬關係 分析機 等 裝備補強 問題	-	환경관리과	추후계획
21. 水沒로 因한 나머지 住宅은 固有 韓屋으로 改良하여 民俗遊藝場 建設	-	주택과	추후계획
22. 댐의 象徴的 構造物로 噴水臺를 設置하고 觀光地化하여 周邊을 週末農場이 造成되도록 構想	-	관광과	추후계획
23. 渡船運航地 船着場 未設置地域 早速한 設置 要望	건설부 수자원공사	치 수 과	중앙건의

區 分	建 議 事 項	處 理 部 署		處 理 結 果
		中 央	道	
個 別	56 件			
	< 淸 原 郡 > 8 件			
	1. 水質汚染 深刻, 취수탑 上流地域 으로 移轉 要望	건 설 부	도시개발과	중양건의
	2. 汚·廢水 處理場을 政府次元에서 設置要望(5個所)	농림수산부	축 산 과	추 진 중
	3. 댐 周邊 낙시行爲 再許容 要望	환 경 처	축 산 과	검 토 중
	4. 文義 下水處理場 設置로 미천1구 ~ 6구 保護區域 解除 要望	환 경 처	도시개발과	불 가
	5. 文義 下水終末處理場 運營費 國, 道費 支援(450百萬元)	환 경 처	도시개발과	해 결
	6. 水資源公社에서 上水道 保護區域 密集地域에 下水終末處理場 設置 와 補償하여야 할 縣案問題 解決	환 경 처 농림수산부	축 산 과 도시개발과	검 토 중
	7. 댐 周邊 觀光農園 및 無公害 工場이 誘致되도록 積極 檢討	농림수산부 건 설 부	도시개발과	검 토 중
	8. 文民時代에 걸맞게 청남대 開放 要求	대 통 서 령 실	-	불 가
	< 報 恩 郡 > 10 件			
	1. 懷南面 - 懷南大橋間 낙시터를 指定하여 各種 便宜施設(化粧室 쓰레기장等)設置	수 산 청 수자원공사	축 산 과	중양건의
	2. 農民은 營農資金을 받고 있으나 漁民은 營漁資金을 받지 못하므 로 生活所得 向上에 寄與할 수 있도록 資金支援 要望	수 산 청 수산협동조합 중양회	축 산 과	중양건의

<p>3. 水没當時 林野等に 移住, 住宅을 新築하였으나 地目變更이 되지 않아 增·改築을 할 수 없으니 住宅地에 대해 垆地로 地目變更 托록 措置 要望</p> <p>4. 畜舍 等 附屬施設을 設置托록 建築規制 解除 要望</p> <p>5. 報恩 - 거교리(어부동)간 道路 擴·鋪裝 要望</p> <p>6. 經濟性 있는 토중메기 等 大淸湖에 放流 要望</p> <p>7. 遊覽船 建造 및 運行(1척 20톤, 1,300百萬원)</p> <p>8. 삼조식 便所設置 事業費 支援 (4個所 20百萬원 : 個所當 4坪 5百萬원)</p> <p>9. 汚物 収去裝備 支援 : 624百萬원 · 쓰레기 遮斷網(서탄리 水域, H 2m, L 200m) · 쓰레기 収去船舶 建造(1척, 50톤)</p> <p>10. 部落共同 陸上養殖場 施設資金을 水資源公社에서 支援(10個所 2,500百萬원)</p>	<p>-</p> <p>환 경 처</p> <p>내 무 부</p> <p>-</p> <p>수자원공사</p> <p>-</p> <p>수자원공사</p> <p>수 산 청 수자원공사</p>	<p>주 택 과</p> <p>도시개발과</p> <p>도 로 과</p> <p>축 산 과</p> <p>치 수 과</p> <p>환경관리과</p> <p>환경관리과</p> <p>축 산 과</p>	<p>해 결</p> <p>추 진 중</p> <p>추 진 중</p> <p>추 진 중</p> <p>불 가</p> <p>추 진 중</p> <p>추 진 중</p> <p>중양건의</p>
<p>&lt;沃川郡&gt; 8 件</p> <p>1. 가두리養殖場 漁業許可(83~93) 延長許可가 되지않아 生計支障 招來 延長 要望</p> <p>2. 댐 周邊 渡船(10척) 老後에 따른 交替, 修理費 支援 要望</p> <p>3. 大淸댐 周邊 წყ시터 造成으로 住民所得에 寄與托록 措置</p>	<p>수 산 청</p> <p>건 설 부 수자원공사</p> <p>건 설 부 수 산 청 수자원공사</p>	<p>축 산 과</p> <p>치 수 과</p> <p>축 산 과 도시개발과</p>	<p>중양건의</p> <p>추 진 중</p> <p>추 진 중</p>

<p>4. 沃川 쓰레기埋立場이 '93年 滿了 되므로 新規 埋立場 設置에 따른 國庫支援 (2,300百萬元)</p> <p>5. 大清댐 區域內 骨材採取使用料 全額 郡收入 措置 要望</p> <p>6. 大清댐 周邊 쓰레기 等 汚物處理 對策 · 水資源公社에서 댐周邊 쓰레기 責任收去 措置</p> <p>7. 新規觀光地(綜合休養業) 開發 制限으로 地域發展 沮害 · 綜合休養業 立地承認이 法抵觸 事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遲延處理되고 있음(沃川 군북 중약리 산 1-1 일대)</p> <p>8. 産卵期 빙어 濫獲防止 指導 및 빙어 繁殖 方案</p>	<p>환 경 처</p> <p>수자원공사</p> <p>환 경 처 건 설 부 수 자원 공사</p> <p>환 경 처</p> <p>-</p>	<p>환경관리과</p> <p>치 수 과</p> <p>환경관리과</p> <p>지역계획과 환경관리과 관광과</p> <p>축 산 과</p>	<p>중앙건의</p> <p>중앙건의</p> <p>중앙건의</p> <p>중앙건의</p> <p>추후계획</p>
<p>&lt;忠州市&gt; 5 件</p> <p>1. 省墓客 및 地域發展 根本對策 으로 재오개 ~ 목벌·남벌간 이설도로 開設 要望</p> <p>2. 댐 建設로 강수욕장이 喪失되어 代替施設 設置 要望</p> <p>3. 忠州市 上水源인 달래강 汚染 防止를 위한 汚物處理施設費 國庫 支援</p> <p>4. 補助댐 水位 上昇에 따른 上水道 施設 對策</p> <p>5. 배수펌프장 設置에 따른 運營費 (年間 2億원) 水資源公社에서 支援</p>	<p>내 무 부</p> <p>-</p> <p>-</p> <p>-</p> <p>-</p>	<p>도 로 과</p> <p>치 수 과</p> <p>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p> <p>도시개발과</p> <p>도시개발과</p>	<p>추진중</p> <p>완 료</p> <p>추진중</p> <p>추진중</p> <p>불 가</p>



<p>&lt; 中原 郡 &gt; 10 件</p>	내 무 부	도 로 과	추후계획
1. 中原 설은 ~ 금성(동량 미라실)간 이설도로 開設 要望	건 설 부	관 광 과 도 시 계 획 과 환 경 관 리 과	추 진 중
2. 忠州湖가 國民觀光地로 開發促進 도록 對策 要望	수자원공사	치 수 과	중양건의
3. 삼탄地域 댐 고수敷地 및 가금 體育公園 周邊 駐車場 敷地 無償 使用 要望	건 설 부 대 전 국 토 관 리 청	치 수 과	추 진 중
4. 댐 放流時 被害가 많은 동량 용대 및 가금 창동地域 堤防築造 배수펌프장 設置	수자원공사	치 수 과	중양건의
5. 忠州湖畔에 뚝단유람선을 運行 하도록 計劃化	건 설 부 수 자원 공사	치 수 과	중양건의
6. '90年 忠州댐 水沒線 調整에 따라 丹陽郡 地域은 補償은 되었으나 中原郡地 未補償地域 補償 및 조정지댐 滿水時 最高水位가 水沒線 以上 上昇으로 農耕地 및 家屋 浸水에 따른 補償 및 移住 對策	수자원공사	농지개량과	중양건의
7. 조정지댐의 가금면地域 農耕地는 잘 떨어지는 흙으로 境界를 이루고 있어 農耕地가 繼續 遺失되고 있어 이에 대한 對策	건 설 부	도시개발과	불 가
8. 忠州댐 廣域上水道 事業費 全額 國庫支援	내 무 부	치 수 과	추후계획
9. 하검단리 移住對策 講究	내 무 부	도 로 과	추후계획
10. 하검단교 上昇 設置 要望	<p>&lt; 堤 川 郡 &gt; 8 件</p>		
1. "忠州湖" 名稱 "淸風湖"로 改稱	건 설 부	지역계획과	불 가

2. 댐水沒 補償時 1次 鑑定價格으로 3次年度 補償으로 인한 被害補償 對策	수자원공사		불 가
3. 댐 유희지를 耕作農家에 賣却 措置	수자원공사		중앙건의
4. 觀光開發은 與件이 좋은 地域을 部分的으로 優先開發	건설부 환경처	관광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추후계획
5. 道稅徵收交付金을 댐 面積 比率로 市郡에 交付	내무부	세정과	불 가
6. 忠州湖 周邊 이설道路에 危險 防止施設 設置	내무부	도로과	추진중
7. 옥순대교 架設	건설부	도로과	불 가
8. 월악 선착장 ~ 덕산 봉화대간의 道路開設 要望	내무부	도로과	추진중
<丹陽郡> 7 件			
1. 벌곡 4團地 開發	건설부	지역계획과 치수과	검토중
2. 수중보 設置 要望	건설부 수자원공사	치수과	불 가
3. 상진교 - 고수간 道路 補修	내무부	도로과	추진중
4. 유희 고수敷地 市郡 財産으로 還元	수자원공사	치수과	중앙건의
5. 적성 - 단성간 大橋 架設	내무부	도로과	중앙건의
6. 下水終末處理場 運營管理費 支援 (서울市)等 受惠者인 下流地域에 負擔시키는 方案 講究	환경처	도시개발과	불 가
7. 新丹陽을 計劃都市로 繼續 發展 도록 支援 對策	건설부	도시개발과	추진중

## 2. 中央關係部處 訪問資料

- 본 資料는 주로 事業名을 羅列한 것으로서 細部的인 推進狀況(內容)은 別添하였음.

### □ 內務部 所管

#### 1. 資源利用稅 新設

#### 2. 댐周邊地域 道路 擴·鋪裝 工事費 國庫支援

○ 報恩 ~ 거교리(어부동)	14.9km	72億원
○ 忠州 ~ 살미선	21.2km	99億원
○ 中原 설운 ~ 금성간	13km	60億원
○ 中原 수회 ~ 창동간	140km	9億원
○ 堤川 월악선착장 ~ 억산	7km	35億원
○ 상진교 ~ 고수간	3.6km	7億원

#### 3. 丹陽 적성 ~ 단성간 장대교 가설 460m 80億원

#### 4. 忠州湖 周邊 移設道路 危險防止施設

- 線形改良, 落石防止網, 미끄럼防止施設 等 36億원

#### 5. 하검단리 移住對策 講究

#### 6. 道稅 徵收交付金 댐面積比率로 市郡에 交付

## □ 韓國水資源公社 所管

1. 댐周邊 休·廢耕 農耕地 被害補償
2. 댐 遊休地 占用料 免除
3. 水沒民에 대한 獎學金 支援
4. 댐周邊 쓰레기, 人命救助, 산불방지, 人員動員用 多目的 船舶建造 支援
5. 遊覽船 建造 및 運港 支援
6. 汚物收去裝備 支援
7. 댐區域內 골재채취 使用料 全額 郡收入措置
8. 댐周邊 쓰레기 等 汚物 水資源公社에서 責任收去
9. 고수부지 無償使用 措置  
예) 삼한地區, 가금體育公園 周邊 駐車場敷地 等
10. 忠州湖畔에 돛대 遊覽船 運行措置
11. 中原 가금 조정지댐 境界 農耕地 遺失防止
12. 댐水沒 補償時 1次 鑑定價格으로 3次 年度 補償에 따른 被害報償
13. 댐遊休地를 耕作農家에 賣却措置
14. 遊休 고수부지 市郡 재단으로 還元

## □ 建設部 所管

1. 용담댐 建設에 따른 問題點
2. 自然環境保全地域 指定에 따른 各種規制 緩和
  - 國土利用 管理法 및 同法 施行令 改正
3. 댐周邊地域 支援金 上向調整
  - 特定 多目的댐法 改正으로 發電販賣收益金의 1% → 10%
4. 國土利用計劃 早速承認
  - 湖畔 觀光地 開發制限 水質 I 給水를 → II 給水에서 적용
5. 댐關聯法이 水資源公社에 有利한 것은 地自體에서 有利하도록 財政
  - 特定多目的댐法 改正
6. 도선운항지 선착장 未設置地域 早速히 設置
7. 大清댐 취수탑 上流地域으로 移轉
8. 댐周邊 도선(10척) 交替 및 修理費 支援
9. 댐周邊 農路, 先着場 낚시터 指定 農耕地 復舊 및 大學, 企業體 誘置  
등을 통해 住民所得寄與토록 措置
10. 忠州湖가 國民觀光地로 開發 促進토록 對策要望
11. 中原 동량, 용대, 가금 창동地域 堤防築造 및 펌프장 設置
12. '90 수몰선 조정 보상시 除外된 中原郡地域 補償對策 및 조정지댐 만수시  
침수되는 農耕地 및 家屋浸水報償과 移住對策樹立
13. 忠州댐 廣域上水道 事業費 全額國庫支援
14. 忠州湖 名稱을 청풍호로 改稱
15. 觀光開發 與件이 좋은 地域을 部分的으로 迂先 開發 → 교리 청풍지구
16. 丹陽 별곡 4團地 開發되도록 措置
17. 丹陽郡 수중보 設置
18. 新丹陽을 計劃都市로서 繼續 發展되도록 支援對策
19. 옥순大橋 架設

## □ 環境處所管

1. 상수원 保護區域 指定에 따른 各種 地域開發制限規制 緩和
  - 원주민에 한하여 住宅新增築, 溫室 等 規制緩和
2. 水質保全 特別對策地域 規制 緩和
  - 環境政策 基本法 第22條 改正
3. 環境基礎施設 擴充負擔金 國庫支援 擴大
  - 下水處理場, 簡易 汚水 및 畜産廢水處理場 70%→80%
4.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受惠者 負擔措置
  - 特別對策地域과 같이 運營費 分擔協約締結도록 措置
5. 댐내 浮遊物處理 一元化
  - 水資源公社에서 댐내 浮遊物 收去處理 全擔
6. 댐周邊 낙시行爲 再許容 - 水道法 改正
7. 淸原 미천리 上水源 保護區域 解除
8. 上水道 保護區域 河水終末處理場 設置 및 補償
9. 垵地 이외의 지목에서 畜舍 等 附屬施設 建築規制 解除
10. 沃川 쓰레기 新規埋立場 設置費 國庫支援 (3億원)
11. 新規觀光地(綜合休養業) 早速히 입지承認
12. 河水終末處理場 運營管理費 受惠者 負擔措置

## □ 農林水産部 所管

1. 안개 등 氣象變化로 인한 農作物 被害補償
2. 汚·廢水 處理場을 政府次元에서 設置  
예) 淸原 품곡, 산덕, 묘암, 문덕, 소적 등
3. 댐周邊 觀光農園 및 無公害工場 積極誘置

## □ 水産廳 所管

1. 가두리 養殖漁業 許可期間 滿了後 對策(沃川, 報恩)  
- 關係法 改正
2. 報恩 회남면 ~ 회남大橋間 낚시터 지정과 화장실, 쓰레기場 等 各種 便宜施設 設置
3. 漁民의 營漁資金 支援
4. 部落共同 육상양어장 施設資金 支援

## □ 山林廳 所管

1. 표고, 느타리버섯 等 住民所得事業 支援擴大

### 3. 댐특위활동일지

일 차	내 용
'93. 9. 13	1. 제1차 본회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 신 완 섭 - 간 사 : 김 재 근 - 위 원 : 한 장 훈, 이 병 두, 김 효 천, 박 종 기, 안 철 호, 유 영 훈, 봉 하 용, 김 진 학
'93. 9. 22 10 : 12 ~ 11 : 00	1. 위원장 사임 협의 · 신 완 섭 위원장 사임은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반력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협의 · 전문위원선임관계, 댐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다음회기 제출
'93. 9. 27 11 : 14 ~ 16 : 54	1. 댐관련 업무 현황 청취 및 활동반 편성 ·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농촌진흥원, 지역경제국의 주요사항 설명청취 · 대청댐 소위원회(청원, 보은, 옥천) -위원장 : 육 봉 호 -위 원 : 한 장 훈, 김 효 천, 박 종 기 -청원 (10. 5), 보은(10. 6), 옥천(10. 7) 간담회 개최 · 충주댐 소위원회 (충주, 중원, 제천, 단양) - 위원장 : 김 진 학 - 위 원 : 김 재 근, 이 병 두 , 유 영 훈, 봉 하 용 - 충주·중원(10. 5), 단양(10. 6), 제천(10. 7) 간담회 개최 2.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 · 출석일시 : 10. 8 ~ 9 (2일간) · 출석장소 : 댐특위회의실 · 출석대상 : 내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보사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일 자	내 용									
	시군	일 시	장 소	계	시군 관계자	시군 의원	지역 주민	기 타	현 지 인	
'93. 10. 5 ~ 10. 7	<간담회 개최 상황>									
	1. 충주댐 소위원회 활동 상황									
	계				129	67	21	41	20	
	충주	10. 5 14:00 ~ 15:20	충주시 상황실	34	12	6	1	5		
	중원	10. 5 10:00 ~ 13:00	중원군 상황실	37	13	5	14	5	가금면 수머리	
	제천	10. 7 11:00 ~ 13:05	제천군 회의실	33	12	5	11	5		
	단양	10. 6 11:00 ~ 14:00	단양군 회의실	25	10	5	5	5	구단양 별곡 4단지	
	2. 대청댐 소위원회 활동상황									
	계				72	21	10	39	12	
	청원	10. 5 10:00 ~ 13:00	군청 회의실	34	27	2	5	4	문의 취수탑	
	보은	10. 6 10:00 ~ 13:20	"	25	6	3	12	4	회남 거교리 어부동	
	옥천	10. 7 10:00 ~ 13:00	"	39	8	5	22	4	군북 용호 막지리	

일 자	내 용
-----	-----

3. 댐관련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접수

구 분	계	공 통	개 별	비 고
계	82	13	69	
층 주 댐	36	6	30	
대 청 댐	46	7	39	

'93. 10. 8  
11 : 11  
~ 11 : 50

1. 댐관련 업무 질의 답변 및 특위 세부추진계획 협의

- 문제점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심층분석 및 대책토의
- 종합적인 사업 추진 계획서 작성

사업명	기 간	세 부 계 획
현황설명청취 (2차특위)	'93. 9. 27 (1)	· 관련 실국장 주요사항 설명 · 활동기본계획 수립(1차)
현황파악 및 조사확인	'93. 10. 5 ~ 10. 7 (3)	· 시군별 현황 파악 · 현지조사 확인 (주민여론 수렴, 현지실사)
제3차 특위	'93. 10. 8 11 : 00	· 추가질의 및 토의, 문제점도출 · 소위활동 사항 협의
	'93. 10. 9	· 종합 세부계획 토의
	'93. 10. 11	· 종합 세부계획 협의, 작성
제4차 특위	'93. 10. 14 10 : 00	· 특위 추진계획 수입 (최종)
간담회	'93. 10. 14 14 : 00	· 댐관련 시군의회의원 초청간담회
토론회	'93. 10. 21	· 댐관련 현안사항 대토론회
관련부서 방문	'93. 10. 19	· 수자원 공사
	'93. 11월중	·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국회, 정당대표
대정부건의안 채택보고	'93. 11월중	

일 자	내	용																																				
'93. 10. 14 10 : 18 ~ 11 : 50	1. 댐특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추진계획서(안) 확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75 348 589 401">사업명</th> <th data-bbox="589 348 777 401">기 간</th> <th data-bbox="777 348 1264 401">세 부 계 획</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5 401 589 480">현황설명청취 (2차특위)</td> <td data-bbox="589 401 777 480">'93. 9. 27 (1)</td> <td data-bbox="777 401 1264 480">· 관련 실국장 주요사항 설명 · 활동기본계획 수립(1차)</td> </tr> <tr> <td data-bbox="375 480 589 597">현황파악 및 조사확인</td> <td data-bbox="589 480 777 597">'93. 10. 5 ~ 10. 7 (3)</td> <td data-bbox="777 480 1264 597">· 시군별 현황 파악 · 현지조사 확인 (주민여론 수렴, 현지실사)</td> </tr> <tr> <td data-bbox="375 597 589 676">제3차 특위</td> <td data-bbox="589 597 777 676">'93. 10. 8 11 : 00</td> <td data-bbox="777 597 1264 676">· 추가질의 및 토의, 문제점도출 · 소위활동 사항 협의</td> </tr> <tr> <td data-bbox="375 676 589 735"></td> <td data-bbox="589 676 777 735">'93. 10. 9</td> <td data-bbox="777 676 1264 735">· 종합 세부계획 토의</td> </tr> <tr> <td data-bbox="375 735 589 793"></td> <td data-bbox="589 735 777 793">'93. 10. 11</td> <td data-bbox="777 735 1264 793">· 종합 세부계획 협의, 작성</td> </tr> <tr> <td data-bbox="375 793 589 872">제4차 특위</td> <td data-bbox="589 793 777 872">'93. 10. 14 10 : 00</td> <td data-bbox="777 793 1264 872">· 특위 추진계획 수입 (최종)</td> </tr> <tr> <td data-bbox="375 872 589 950">간담회</td> <td data-bbox="589 872 777 950">'93. 10. 14 14 : 00</td> <td data-bbox="777 872 1264 950">· 댐관련 시군의회의원 초청간담회</td> </tr> <tr> <td data-bbox="375 950 589 1009">토론회</td> <td data-bbox="589 950 777 1009">'93. 10. 21</td> <td data-bbox="777 950 1264 1009">· 댐관련 현안사항 대토론회</td> </tr> <tr> <td data-bbox="375 1009 589 1068">관련부서 방문</td> <td data-bbox="589 1009 777 1068">'93. 10. 19</td> <td data-bbox="777 1009 1264 1068">· 수자원 공사</td> </tr> <tr> <td data-bbox="375 1068 589 1146"></td> <td data-bbox="589 1068 777 1146">'93. 11월중</td> <td data-bbox="777 1068 1264 1146">·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국회, 정당대표</td> </tr> <tr> <td data-bbox="375 1146 589 1244">대정부건의안 채택보고</td> <td data-bbox="589 1146 777 1244">'93. 11월중</td> <td data-bbox="777 1146 1264 1244"></td> </tr> </tbody> </table>	사업명	기 간	세 부 계 획	현황설명청취 (2차특위)	'93. 9. 27 (1)	· 관련 실국장 주요사항 설명 · 활동기본계획 수립(1차)	현황파악 및 조사확인	'93. 10. 5 ~ 10. 7 (3)	· 시군별 현황 파악 · 현지조사 확인 (주민여론 수렴, 현지실사)	제3차 특위	'93. 10. 8 11 : 00	· 추가질의 및 토의, 문제점도출 · 소위활동 사항 협의		'93. 10. 9	· 종합 세부계획 토의		'93. 10. 11	· 종합 세부계획 협의, 작성	제4차 특위	'93. 10. 14 10 : 00	· 특위 추진계획 수입 (최종)	간담회	'93. 10. 14 14 : 00	· 댐관련 시군의회의원 초청간담회	토론회	'93. 10. 21	· 댐관련 현안사항 대토론회	관련부서 방문	'93. 10. 19	· 수자원 공사		'93. 11월중	·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국회, 정당대표	대정부건의안 채택보고	'93. 11월중	
사업명	기 간	세 부 계 획																																				
현황설명청취 (2차특위)	'93. 9. 27 (1)	· 관련 실국장 주요사항 설명 · 활동기본계획 수립(1차)																																				
현황파악 및 조사확인	'93. 10. 5 ~ 10. 7 (3)	· 시군별 현황 파악 · 현지조사 확인 (주민여론 수렴, 현지실사)																																				
제3차 특위	'93. 10. 8 11 : 00	· 추가질의 및 토의, 문제점도출 · 소위활동 사항 협의																																				
	'93. 10. 9	· 종합 세부계획 토의																																				
	'93. 10. 11	· 종합 세부계획 협의, 작성																																				
제4차 특위	'93. 10. 14 10 : 00	· 특위 추진계획 수입 (최종)																																				
간담회	'93. 10. 14 14 : 00	· 댐관련 시군의회의원 초청간담회																																				
토론회	'93. 10. 21	· 댐관련 현안사항 대토론회																																				
관련부서 방문	'93. 10. 19	· 수자원 공사																																				
	'93. 11월중	·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국회, 정당대표																																				
대정부건의안 채택보고	'93. 11월중																																					
'93. 10. 19	1. 수자원공사 초청 간담회 개최																																					
'93. 10. 21	1. 댐관련 현안사항 대토론회 개최 - 참석인원 : 250명 - 장 소 : 도청대회의실 - 토 론 자 : 대청댐 소위원장 육 봉 호 충추댐 소위원장 김 진 학																																					

일 자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 충대 수자원 수질연구센터 소장 심 순 보 교수            건대 사회정책 연구소장 이 백 훈 교수</p> <p style="text-align: center;">- 사 회 : 김 재 근</p>
'93. 11. 10 15 : 46 ~ 16 : 55	<p>1.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현황 청취</p> <p>- 보고자 : 건설도시국장 이 중 익</p>
'93. 11. 26 14 : 11 ~ 15 : 03	<p>1. 댐관련 대책 협의</p> <p>- 오병천 전문위원 → 임 성 규 기록계장 업무대행</p> <p>-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방안 계획 수립</p> <p>·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당 1원 (시·군별 배분은 담수면적 비율)</p> <p>·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이며</p> <p>· 과세대상 : 임산자원 및 관광 수입포함</p>
'93. 12. 4	<p>1. 댐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관련기관에 송부</p> <p>· 충청북도 국회의원 출신 (10명)</p> <p>· 도내 시·군의회의장 (13명)</p>
'93. 12. 16	<p>1. 댐주변 지역 포괄사업비 집행</p> <p>· 대청댐 5억원</p> <p>· 충주댐 5억원</p> <p>2. 대정부 건의문 채택</p> <p>· 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1994년까지 연장 운영</p> <p>· 대정부건의문 채택 23일로 연기</p>
'93. 12. 23	<p>1. 대정부 건의문 재협의</p> <p>· 시기부적절 '94년으로 연기</p> <p>2. 중앙부처와의 규제관계법 검토</p> <p>· 보사환경국, 건설도시국담당자 참석 규제법 검토</p> <p>· 댐 관련대책특별위원회 기획단 설치 유보</p>

일 차	내 용										
'94. 2. 16 14 : 14 ~ 15 : 20	1. 댐관련 업무 세부 추진계획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반 구성 - 26일 본회의 상정도 지사에게 건의</li> <li>·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장 : 도시계획과장</li> <li>-반원 : 해당실과 주무계장 또는 해당계장 (15명)</li> </ul> </li> <li>· 중앙관련부처 방문 : 6, 7, 8월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li> <li>· 대정부 건의 : 8, 9월</li> <li>· 충북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 5, 6, 7월</li> <li>· 본회의 결과보고 : 11월</li> </ul>										
'94. 3. 24 10 : 23 ~ 10 : 36	1.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당면업무 사항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반 출석 상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장 : 도시계획과장</li> <li>-반원 : 15명</li> </ul> </li> </ul>										
'94. 4. 26 11 : 11 ~ 16 : 24	1. 지역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table border="1" data-bbox="396 1160 1201 1274"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공 통</th> <th>개 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79</td> <td>23</td> <td>56</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공 통	개 별	비 고	계	79	23	56	
구 분	계	공 통	개 별	비 고							
계	79	23	56								
'94. 4. 27 15 : 06 ~ 15 : 24	1. 지역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계속)										
'94. 5. 27 10 : 13 ~ 12 : 16	1. 지역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계속)										
'94. 6. 29	1. 지역주민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계속) ※ 다음 회기에 중간 보고										

## 4. 자원세 신설 추진 상황

### □ 신설의 필요성

- 자원세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자원을 세원화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도의 경우 충주·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기존의 지방세 재원이 사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의 강구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세원화함.

### □ 추진방향

- 자원이용세의 과세대상은 우리도의 자원현황을 기준할때 수자원, 지하자원, 관광자원으로 크게 구분됨.
- 그러나 수자원과 지하자원에 대하여는 이미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 관광자원을 세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하되

$$\boxed{\text{지역개발세}} + \boxed{\text{지역개발세}} = \boxed{\text{자원세신설}}$$

- 다만, 추진의 현실성을 감안 기존설치세목에 대하여는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범위 확대검토 건의

##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지역개발세

#### ○ 집행부서 추진

- '92년 8월부터 4회에 걸쳐 중앙부서에 건의

#### 내용)

- 발전용수 : 물 10m<sup>3</sup>당 1원 → 3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1 → 1,000분의 3
- 지하수 : 원수 → 원수 + 첨가물

- '94. 3 : 생수시판 허가과 관련 지하수에 대하여만 별도 세율인상 및

#### 과세대상 범위확대 건의

- 현행 지하수 1m<sup>3</sup> 당 10원 → 1,000원
- 원수에 한해 과세 → 원수 + 첨가물
- 세수증대액 : 3억정도

#### ○ 도의회 추진

- '94. 5월 내무위에서 충청북도세조례 개정현행 지역개발세 세율의 50% 인상

#### 내용)

- 발전용수 : 물 10m<sup>3</sup> 당 1원 → 1원 50전
- 지하수 : 물 1m<sup>3</sup> 당 10원 → 15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1 → 1,000분의 1.5

관광세 신설

○ '94. 3월 관광세 신설안 건의 → 내무부

관광세 신설(안) 요약

1. 형 태 : 도세, 목적세
2. 납세 의무자 :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이용자
3. 과 세 권 자 : 시장, 군수
4. 과세 표준액
  - 관광지 입장, 주차요금, 관광시설이용요금, 관광숙박요금
5. 세 율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0

【 내 무 부 】

○ 검토의견

- 현행 세목중 지역개발세는 세수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부산 컨테이너 92.4%) 과세대상으로 볼때도 자원세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따라서 지역개발세의 세목을 자원세로의 변경 검토중임.
- 그러므로 관광세의 새로운 세목 신설보다는 자원세의 과세대상에 관광세가 포함 되도록 할 계획임.

○ 추진상황

- 민자당 “경제연구회”에 관광세 신설안 보고 (세제국장)

※ 민자당 경제연구회

- 구성 : 전직 관료출신 국회의원 8명 (임사빈, 나용배등)
- 성격 : 민자당내 경제연구 친목단체



## □ 추진평가 (내무부 입장)

### 지역개발세

- '92. 8월부터 건의한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에 대하여 '92 신설세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어려움을 표명하였으나
- 생수시판 허가와 관련하여 지하수에 대한 세율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므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전반에 대한 세율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관 광 세

- 1차 내무부 검토의견과 같이 자원세를 흡수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아지나 국세·지방세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장기발전대책으로 보아야함.

## □ 향후 대책

- 자원세 신설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의
- 관련 자원기관의 협조 요청

## 5. 국회의원과과의 간담회 자료

### - 댐 주변 주민 불편 (피해) 법령 -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3.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4. 수산업법

### - 자원이용세 신설 (안) -

- 댐주변 주민불편(피해) 법령 -

법 규 명	현 행 규 정	문제점(주민불편사항)	개 정 안	소관부서
<p>1. 환경정책기본법</p>	<p>○ 제2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p> <p>① 환경처장관은 환경의 오염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 환경처고시 제90 - 16호 ('90. 7. 19)</p> <p>※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고지원</p>	<p>○ 환경처고시의 I 권역 축산시설중 축산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시에는 수질오염피해가 없는데 계속 신규입지 금지의 규제를 받고 있음</p> <p>○ 댐주변의 시·군 중 특별대책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는 완화하고 있으나,</p>	<p>○ 하수처리장이 시설되어 오수 또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가능지역은 규대상에서 제외</p> <p>○ 취약한 군제정을 감안하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일정한 비율의 유니영비를 국고에서 지원</p>	<p>○ 도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기획계</p> <p>○ 중앙 환경처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p>

법 규 명	현 행 규 정	문제점(주민불편사항)	개 정 안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주변 지역의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움.</li> </ul>		

법 규 명	현 행 규 정	문제점(주민불편사항)	개 정 안	소관부서
2. 환경정책기본법령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환경기준) 환경처고시 91-35호 ('91. 5. 31)</li> <li>○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 및 달성기간 고시</li> <li>○ '94. 1. 1 까지 현재 II등급수에서 I 등급수로 상향조정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II등급수에서 I 등급수로 상향조정 하는 환경처고시로 인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주변 관광지개발지연</li> <li>-인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치 못함</li> <li>-지역발전에서 소외되는 현상초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주변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처고시 내용 적용 기준 완화</li> <li>- I 등급수 수질개선 전이라도 관광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사환경국</li> <li>환경관리과</li> <li>환경기획계</li> </ul> </li> <li>○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처</li> <li>수질보전국</li> <li>수질정책과</li> </ul> </li> </ul>

법 규 명	현 행 규 정	문제점(주민불편사항)	개 정 안	소관부서
3. 수도법 상수원관 리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li> <li>2. 생활기반시설: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지목상 대지에서만 건축할 수 있으므로</li> <li>○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대지 이외의 지목에서는 신규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에서는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주민피해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li> <li>○ 중앙 환경처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li> </ul>

법 규 명	현 행 규 정	문제점 (주민불편사항)	개 정 안	소관부서
4. 수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법 제81조(보상)규정에 수산업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에 의해 면허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시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본조의 공익상 범위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정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 가두리 양식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있으나</li> <li>○ 현행 법령상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면허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데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li> <li>○ 양식어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 및 생계지장 초래</li> </ul> <p>※ 대청호 가두리양식장 현황</p> <p>-면허건수 : 24건</p> <p>-피해보상액 : 약81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 제1항 제8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때” 를 신설</li> <li>- 대청호 가두리양식장 연장불허에 따른 법적 보상 규정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농수산물축산과 (수산계)</li> <li>○ 중앙수산청국수생산자원조성과환경처수질보전국수질제도과</li> <li>※ 수산청에 규정을 제정할려고 하나 환경처가 합의하지 않음</li> </ul>

## 자원이용세 신설(안)



# 자원이용세 신설(안)

## 지방세법(자원이용세)

제253조(과세대상) 자원이용세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 지하수, 지하자원, 관광자원,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자원이용세)

제216조(과세대상) 법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는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전기사업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를 제외한다.
2. 지하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한 지하수와 목욕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법에 의하여 채수허가를 받아 채수한 온천수
3. 지하자원 :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규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4. 관광자원 : 국도립공원, 국민관광지, 사적지, 박물관, 동굴관지, 골프장, 스키장, 유도선, 서립장, 호텔숙박업(관광호텔, 스토스텔,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함), 관광지 주차장

## 지방세법(자원이용세)

## 지방세법시행령(자원이용세)

제254(납세의무자) 자원이용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 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용용수(온천수에 한한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3. 지하자원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4. 관광자원 이용자
5.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탁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제255조(비과세) ①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대상 자원등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이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컨테이너, 연안수송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제217조(비영리사업자) 법제2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지방세법(자원이용세)

②생산된 전력등을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자원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5조(납세지) 자원이용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발전용수에 대한 자원이용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자원이용세는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3. 지하자원에 대한 자원이용세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접분한다.
4. 관광자원에 대한 자원이용세는 관광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5. 컨테이너에 대한 자원이용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탁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 지방세법시행령(자원이용세)

## 지방세법(자원이용세)

## 지방세법시행령(자원이용세)

제2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원이용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m<sup>3</sup>당 3원
2. 지하수 : 개발하여 채수된 물 1m<sup>3</sup>당 1,000원
3. 지하자원 : 채관된 광물가액의 3/1,000
4. 관광자원 : 관광자원 이용요금의 100/1,000
5.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590

②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원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50/100범위안에서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제258조(부과징수) ①자원이용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광자원 및 컨테이너에 관한 자원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59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자원이용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 지방세법(자원이용세)

②납세의무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관광자원 및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자원세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591-

제260조(감면) 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원이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원이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결과 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자원이용세)

제218조(특수사정의 정의) 법제260조에서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6. 댐주변 지역주민의 불편·건의사항 개선방안

【 충 주 댐, 대 청 댐 】

지역 공통사항  
( 23건 )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1.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각종지역개발제한 규제완화 건의</p>	<p>&lt; 보호구역의 규제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기반시설(주택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함</li> <li>-주택(지하층이 없는 경우)117㎡</li> <li>-부속건물 : 33㎡</li> </ul> </li> <li>· 소득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물저장고 : 99㎡</li> <li>-건조실 : 100㎡</li> <li>-퇴비사 : 100㎡</li> <li>-창고(가설물) : 100㎡ 등</li> </ul> </li> <li>· 주민공동이용시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정미소, 구판장, 농기계수리소</li> </ul> </li> <li>·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규정에 의한 상호간의 변경만 가능</li> </ul>	<p>&lt;규제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 중임 &gt;</p> <p>※주요골자 : 환경처(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거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완화</li> <li>· 생활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원주민에 한하여 주택신증축가능</li> <li>주택 : 154㎡ 부속건물 : 66㎡</li> </ul> </li> <li>· UR대비 영농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온실 500㎡ 등)</li> <li>· 종교시설 300㎡까지 허용</li> <li>· 환경청 입법 예고중 '94. 4</li> </ul>	<p>환경처 (수질 정책과)</p>	



(공통사항)

환경관리 실적과 환경관리 계획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2.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	·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할수 있는 행위」 규정	· 관계법 개정	건설부 (토지이용 계획과)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3.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지정은</li> <li>-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li> <li>-지정 : '90. 7. 19 (환경처고시 제90 - 15호)</li> <li>-지역 : 3군(청원, 보은, 옥천) 11읍면(666.22km<sup>2</sup>)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 저해 및 주민 일상생활 불편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중부권 상수원인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볼때 현실적으로 규제완화는 어려운 실정으로서</li> <li>· 댐을 관리하고 대청호를 이용 원수를 판매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원수판매 대금에 일정액을 가산징수후 해당지역에 지원하는 방안 강구를 환경처에 건의한 바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회신</li> </ul>	<p>환경처 (수질정책과)</p>	

(공동사항)

치수 실적 이수계

건의내용	문제점	추진실적및대책	소관부서	비고
4. 댐주변지역지원금 상향조정 · 발전판매수익금의 5/1,000 → 50/1,000	· 지원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는 재원으로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간 협의 확정됨. 발전판매수익금의 10/1,000으로 상향조정	· 기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지원 -지원기금 : 한전의 전전년도 전기판매 수익금의 5/1,000  ·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으로 지원기금 확대 추진 -지원기금 : 발전판매수익금의 10/1,000 수도 및 공업용수 수익금의 50/1,000  -건의(충북도 → 건설부) (치수58701 - 110 '94. 2. 28) 발전판매수익금의 10/1,000→100/1,000	건설부 (댐계획과)	추진중

(공통사항)

도시개발, 환경관리 실과 환경기획 상하수도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5.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부담금 국고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시에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상 부담비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설치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과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환경오염유발 제품에 대한 부담금제 신설, 공채발행, 차관도입, 환경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확충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강구중임</li> <li>·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국고, 양여금 등 보조율이 상향 조정 되도록 대책강구(환경처에 건의계획임)</li> </ul> <p>※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안)</p> <table border="1" data-bbox="1070 620 1558 889"> <thead> <tr> <th>현</th> <th>행</th> <th>조</th> <th>정</th> </tr> </thead> <tbody> <tr> <td>하수처리장</td> <td>70%</td> <td>80%</td> <td></td> </tr> <tr> <td>간이오수처리장</td> <td>70%</td> <td>80%</td> <td></td> </tr> <tr> <td>축산폐수처리장</td> <td>7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현	행	조	정	하수처리장	70%	80%		간이오수처리장	70%	80%		축산폐수처리장	70%	80%		<p>환경처 (수질정책과)</p>	
현	행	조	정																	
하수처리장	70%	80%																		
간이오수처리장	70%	80%																		
축산폐수처리장	70%	80%																		

(청원군)

농산 실과 농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6. 인개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 가소 피해보상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국내외 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의 계량적 조사는 지극히 지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댐 건설전 주변지역의 작물별 생산단수의 조사 사례 없음</li><li>- 농작물의 작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기후, 토양, 재배관리등)</li></ul></li><li>· 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지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원시에도 한시적이 아닌 매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해야하므로 지방재정 압박</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개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음</li> <li>· 농촌진흥원의 연구 검토결과에 따라 대책강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국내외자료</li></ul></li></ul>	농림수산부 (농산과)  미국의 농업보호 자료수집제출	

건의 내용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div data-bbox="544 309 682 36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국 내</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하지 않는 도 : 강원도,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li> <li>· 지원하는 도 : 경기도(팔당댐 주변민 지원)</li> </ul> <p>&lt;경기도 지원사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당댐 주변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각종규제를 받아 주민생활에 불편이 클 뿐만아나리 안개등으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어 영농비 간접지원</li> </ul> </li> <li>· 지원기간 : '88년 ~ '94년</li> <li>· 지원지역 : 양평, 광주, 남양주군(팔당댐 주변)</li> <li>· 지원대상 : 댐 연안으로부터 2km이내 전·답(당해 군수가 결정)</li> <li>· 지원면적 : 4,660ha</li> <li>· 지원금('88~'94) : 3,599백만원</li> </ul> <table border="1" data-bbox="589 711 1564 819"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88</th> <th>'89</th> <th>'90</th> <th>'91</th> <th>'92</th> <th>'93</th> <th>'94</th> </tr> </thead> <tbody> <tr> <td>144</td> <td>460</td> <td>599</td> <td>599</td> <td>599</td> <td>599</td> <td>599</td> </tr> </tbody> </table> <p>※ 지원기준 : ha당 128,445원(비료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방법 : 해당농가에 현금으로 지원</li> <li>· 지원상의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지역과의 형평상 유지 지난으로 각종 민원 빈발</li> <li>= 팔당호 주변지역 비농가와외의 형평상</li> <li>= 다른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과의 형평상</li> <li>= 그린벨트등 각종 규제지역과의 형평상</li> <li>= 안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다른지역 댐, 호수, 하천지역 주민과의 형평상</li> <li>- 팔당호 주변지역내에서도 지원받는 농경지와외의 인접한 전·답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민원 빈발</li> <li>- 지방재정으로 지원의 한계 : '90년이후 동결</li> <li>= 농가당 지원금액이 적어 효과 미흡 : 호당 6~7만원정도</li> </ul> </li> </ul>	'88	'89	'90	'91	'92	'93	'94	144	460	599	599	599	599	599		
'88	'89	'90	'91	'92	'93	'94											
144	460	599	599	599	599	599											

건의 내용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div data-bbox="558 280 695 3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외 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원등에 문의하였으나, 외국 사례의 입수는 지난함.</li> <li>※참고 : 일본의 농작물 재해보상 제도</li> </ul> <p>&lt;일본의 농작물 재해보상 제도&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공제금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의 : 농가가 재해나 큰피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일정액의 공제보험에 가입</li> <li>· 보험금지급 :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 ← 정부는 공제재보험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재보험 보증 (현재 6백억엔) ← 부족시 일반회계에서 부담</li> <li>※ '93 년해 15ha 경작 농가의 경우 약 750만엔정도 보험금 수령</li> </ul> </li> <li>2. 천재 지금법이 발동됐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 한도액 : 농가당 200만엔 ← 부족시 자작유지자금(재해자금)이용가능 (농가당 150만엔 한도)</li> <li>※재해자금 조건 : 금리4%, 3년거치 17년 상환</li> </ul> </li> <li>3. 각종차입금과 이자 및 외상 농지재대금 상환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기일이 된 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연기</li> <li>·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보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방법</li> <li>· 상환기한을 연기하지 않고, 내년이후 자금의 상환기한내에 올해 상환하지 않았던 것을 합쳐서 상환하는 방법</li> </ul> </li> </ol>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7. 댐주변 휴·폐경 농경지 피해 보상 (댐주변 휴·폐경지를 상세히 조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택개량, 도로개설등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 강구)</p>	<p>· 댐 축조당시는 도강하여 경작하여도 수지가 맞았으나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타산이 맞지않아 휴·폐경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휴·폐경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휴·폐경에 대한 보상 및 토지 매입은 불가한 실정임</p>	<p>· 관련부서(12개과)에 댐주변 휴·폐경지역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협조요청 : 지역계획과(도계13131 - 1028 '94. 6. 16)</p> <p>· 유·휴농지 최소화 대책 지침시달 : 농지계량과(농계51315 -524 '94. 6. 15)</p> <p>· 댐 주변지역 휴·폐경지 별도집계 대책 강구)</p>	<p>수자원공사</p>	<p>추진 상황 추가 보고</p>



건의내용	문제점	추진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8. 댐내 부유물 처리일원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강구</p>	<p>댐 부유물 처리 체계가 해당 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적 인 협조 인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기 부유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수질오염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내 부유물 처리방안에 대하여는</li> <li>· 평상시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li> <li>· '93. 9. 9일 건설부에 댐내 부유물 전용 수거선 건조를 건의하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2척을 발주 금년 7월말경에 운항할 계획임</li> <li>· 8월 이후에는 수거선을 이용, 부유물을 수거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대처하겠음</li> <li>·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토록 관련규정 삽입조치에 대하여는</li> <li>· 『댐내에서 수거된 부유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기하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li> <li>·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li> <li>· 댐의 원수 및 발전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 수거를 전담처리토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음</li> </ul>	<p>환경처 (수질관리과) 건설부 수자원공사</p>	

(공통사항)

측산 실과 수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9. 가두리 양식어업 허가기간 만료 후 대책	· 현행관계법에 상수도수질보전을 위해 면허기간연장이 불허되었을 시 보상규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 육상양어장 이설희망 어민에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용자부문) 자금 140백만원을 용자지원하고 있음 ('93~ '94 : 4건 560백만원)</li> <li>· 개선방안 : 육상양어장 이설지원 자금에 보조금이 50%이상 반영되도록 건의</li> </ul>	수산청 (자원조성과)	

(공통사항)

축산 실과 수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0. 어류 산란기(4~6월)댐 수위 적정 유지 (산란기 방어 남획방지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방어알 이식에 힘쓸 것)	· 4~6월의 댐물 방류는 장마대비 및 농업용수를 위한 것임으로, 어류산란을 위하여 댐물 방류를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됨	· 인공산란장 설치, 치어방양, 방어알이식으로 내수면자원조성 및 자연번식을 제고('94 계획) -인공산란장 조성 : 10,000M ('88 ~ '93 : 38,820M) -치어방양 940천미 ('93 : 1,879천미) -방어알이식(완) 46,000천미 ('85 ~ '94 : 480,700천미)		

(공통사항)

세정 실과 세정 개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1. 수자원세 신설 (수자원세, 관광세등을 포함한 자원이용세 신 설방향으로 세법개정 (안)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 12. 31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세율체계가 낮아 ('93 지방세 총수익액의 2.7%) 신설세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설세목(수자원세)은 타당치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세율조정 개정(안)을 중앙에 건의</li> <li>관광세 신설 내무부에 건의 ('94. 3. 8)</li> <li>도세조례개정('94.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개발세 세율 조정</li> <li>- 발전용수 10m<sup>3</sup>당 1원 → 1원 50전</li> <li>- 지하수 1m<sup>3</sup>당 10원 → 15원</li> <li>- 지하자원 1/1000 → 1.5/1000</li> </ul> </li> <li>※국회 민자당 경제연구회와 내무부주간 간담회시 자원세 신설 의견조정                →지방세법 개편 작업시 반영</li> </ul>	내 무 부 (세제과)	

건의내용	문제점	추진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12. 국토이용계획 조속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 군북면 국민관광지 조성 - 대상지연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관광휴양시설 입지할 경우 대청호수질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지시 (환경처 → 도)</li> <li>· 충주호 주변 관광지 개발 - 충주호는 현재의 수질이 II급수로서 '94까지 I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수질개선 목표 시한인 '94년이 후에 수질개선 사항이 보아 결정하겠다는 회신있음 (건설부 → 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청호 수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용역 의회('93. 9. 14 백수환경)</li> <li>· 용의결과를 토대로 오수처리시설 계획을 보완하여 환경처에 재협의 요청하되, 옥천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병행추진</li> <li>· 정부가 I급수 목표로 정하고 있는 '94년 이전이라도 지역개발의 여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관련부서와 재협의</li> </ul>	<p>건설부 (토지이용 계획과)</p>	

(공통사항)

치수 실과 이수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3. 댐유휴지 점용료 면제		· 수자원공사와 협의중 (건의 '94. 3. 25)	수자원공사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14. 표고재배 사업등 주민 소득 사업지원 확대 (표고버섯보다 소득이 높은 영지나 느타리 버섯재배에 관심을 가지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고재배용 참나무(지목) 일시 확보 및 지원자금 확보에 어려움</li> <li>· 댐지역 주민의 느타리, 영지의 자금 신청이 없고, 일시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표고재배 시범단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군1품목 사업지구</li> <li>=청원(가덕, 남이, 문의, 부용)</li> <li>-사업량 :</li> <li>=재배장소설치 : 6,000평</li> <li>=접 종 량 : 10만분</li> <li>-사업비 : 300백만원</li> <li>-사업주체 : 청원군수</li> </ul> </li> <li>· '94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자금명 : 단기소득 입산물생산자금</li> <li>-용 자 금 : 672백만원</li> </ul> </li> <li>· 소득사업지원위한 영림계획운영으로 소요 자재 안정적 확보</li> <li>· 고품질 생산위한 기술지도 실시</li> <li>· '94 버섯재배 지원사업은 기 추진중에 있으므로 댐지역 주민이 자금희망시 사업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원 : 농특회계 용자계정</li> <li>=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금리 연5%</li> <li>=사업량 : 4,763평(균상면적)</li> <li>=사업비 : 466,800천원(용자)</li> </ul> </li> </ul> </li> </ul>	<p>산림청 (이용과)</p>	

(공통사항)

치수 실적 이수 계

건의 내용	문 제 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5. 수몰민에 대한 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자원공사에서 '90년부터 댐 주변지역주민자녀에게 육영사업으로 계속 장학금 지급하고 있음</li><li>· 추진중인 육영사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학금 지급</li><li>- 교육기자재 지원</li><li>- 교지 발간지원등</li></ul></li></ul>	수자원공사	



(공통사항)

치수 실적 이수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6. 댐주변 쓰레기, 인명구조, 산불방지, 인원동원용 다목적 선박 건조지 원	· 다목적용 선박은 특수선으로 건조 지난	·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 (치수 58730 - 775, '93. 11. 22)  · 한국수자원공사 회신 지원불가 (댐사업 58730 - 1426, '93. 12. 09)	수자원공사	불가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17. 환경기초시설 확충(운영비등)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므로 수혜자부담 조치요망 (본건은 일부 시·군의 국한 사업이 아니라 공통사항으로 수혜자분연담요구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기 바람)</p>	<p>· 댐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시에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지방비율에 따른 지방비 과중 · 운영관리에 필요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환경오염유발 제품에 대한 부담금제 신설, 공채발행, 차관도입, 환경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확충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강구중임</li> <li>·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국고, 양여금등 보조율 상향조정 방안 강구(보은, 옥천, 청원)</li> <li>·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충남, 대전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 협약을 체결하여 분담하고 있음</li> </ul>	<p>환경처 (수질정책과)</p>	

(공통사항)

주택 실과 주택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8. 기용자 된 국민주택 자금을 농촌주택 용자로 상환방법 전환 (국민주택기금을 용자받아 주택을 건설한 후 원리금을 월납으로 상환중에 있는 것을 분기납, 반년납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건의	· 농업소득의 불균형으로 매월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심화되고 있음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제21조 관련 [발표 1]에 의거 읍면지역은 분기반년납으로 상환가능 · 주택은행에 용자금상환방법 요청 ('94. 4. 28) · 주택은행 회신 ('94. 5. 4) -대출 계좌별로 상환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는 대환시 각 세대별로 납입주기 변경 가능 · 각군에 시달 ('94. 4. 12)	건설부	

(공통사항)

치수 실적, 이수 개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9. 댐관련법이 수자원공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제도적인 문제해결		· “특정다목적댐법” 개정공포 ('93.12.10) 되어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중(건설부) · 도 의견제출('94. 2. 28 치수58701-110) 각 시군 및 관련부서 의견반영  ※충북도의견이 관철되도록 치수과장, 이수계장이 건설부 방문	건설부 (댐계획과)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20.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중금속 관계 분석기 등 장비보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장비로 중금속류는 분석할수 있으나 향후 추가검사 항목으로 예상(벤젠, 톨루엔, 알루미늄 등)되는 휘발성유기물질 중금속류, 신합성 물질등의 검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검사장비인 I.C.P(유도결합 프리즈마 발광광도계), GC - Mass(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등을 확보할 예정이며, '94. 4. 22일자 환경연구사 4명이 정원상에 증원되어 향후 공개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임</li> </ul>	환경관리과	

(공통사항)

주택 실과 개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21. 수몰로 인한 나머지 주택은 고유 한옥으로 개량하여 민속유회장건설		·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사업 추진시 고유 전통미의 한옥주택으로 개량 협조 요청		

(공통사항)

관광 실적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22. 댐의 상징적 구조물로 관광농 분수대를 설치하고 주변이 주말농장이 조성되도록 구상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조성되는 관광농원, 농촌휴양관광지대, 관상어양식장 등 조화있게 분수대설치 권장	관광과 (시·군)	

(공통사항)

치수실과 이수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23. 도선 운항지 선착장 미 설치 지역 조속한 설치 요망		· '94. 5. 30 건설부에 도선 교체비 및 선착 장시설 건설비를 지원토록 건의하였으며, 건설부의 지원여부 확정후 검토추진 하겠 음.	건설부 (담계획과) 수자원공사	



## 군별 개별사항

( 56건 )

◦ 청원군	8건	◦ 충주시	5건
◦ 보은군	10건	◦ 중원군	10건
◦ 옥천군	8건	◦ 제천군	8건
		◦ 단양군	7건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1. 수질오염이 심각하니 취수탑을 상류지역으로 이전요망 (대청댐광역 상수도 2단계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시 취수탑 이전건의 반영되도록 조치)</p>	<p>· 취수탑부근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수돗물에 이취미 발생</p>	<p>· 취수탑 이전 건의          -일 시 : '94. 5. 16          -건의처 : 건설부 용수과          -건의내용 :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가 착수됨에 따라 취수탑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취수탑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p> <p>※기본설계 착수          -일 시 : '94. 5. 4          -시행처 : 건설부          -용역비 : 682,500천원          -용역기간 : '94. 5. 4 ~ '95. 5. 3 (365일간)          -용역회사 : 도화종합기술공사</p>	<p>건설부 (상수도과)</p>	

(청원군)

축산 실과 수의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2. 오·폐수처리장을 정부차원에서 설치(5개소: 품곡산덕, 묘암, 문덕, 소전)요망</p>	<p>· 오·폐수 처리시장 시설 지원 계획 없음.</p>	<p>○ “축산폐수처리시설비” 양축농가에서 신청하면 중앙 및 지방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비 지원가능</p> <p>○ 개별양축농가 지원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정화시설(지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3백만원(보조80%, 자담20%)</li> </ul> </li> <li>· 간이정화시설(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42백만원(보조50%, 용자50%)</li> </ul> </li> <li>· 정화시설(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10백만원(보조50%, 용자50%)</li> </ul> </li> <li>· 개별농가비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100백만원(용자70%, 자담30%)</li> </ul> </li> </ul>	<p>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p>	

(청원군)

도시개발 실적 상수도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3. 댐주변 낚시행위 재허용	· 수도법에 의거 허가할 수 없는 사항임	· 낚시 행위 허용시 수질요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환경처 (수질정책과)	

(청원군)

도시개발 실과 상하수도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4. 문의 하수처리장설치로 미천1구 - 6구 보호구역 해제 요망</p>	<p>·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은 하수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p>	<p>· 환경정비 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환경처에서 검토중(입법예고)</p> <p>·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상 불가하므로 환경정비구역의 조속한 지정으로 주민불편해소</p>	<p>환경처 (수질정책과)</p>	

(청원군)

도시개발 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5. 문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국도비 지원 (4억5천만원)		· 문의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음	환경처 환경보호과	

(청원군)

축산, 도시개발 실과 수의, 상하수도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6.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밀집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와 보상을 하여야 현안문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종말처리장설치와 보상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함</li> <li>· 하수종말처리장설치는 해당지역의 하수발생량이 적어 설치하기 어려움 (읍 이상 도시우선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폐수처리장으로 건설 검토</li> </ul>	<p>환경처 (하수처리시결과)</p> <p>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p>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7. 댐주변 관광농원 및 무공해 공장이 유치되도록 적극 검토</p>	<p>○자연환경보전지구로 규제 (개별법으로 규제)</p> <p>○댐 주변이 상수도보호구역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법상 상수도보호구역이고</li> <li>·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임. 상수도보호구역에서의 공장설립 금지내용</li> <li>-창업공장 :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km</li> <li>-개별공장입지지정 :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20km</li> <li>-일반공장 : 상수도보호구역</li> </ul> <p>·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공장부지면적의 50%이하의 공장 증설(폐수, 대기배출시설 공장 제외)</li> <li>-레미콘제조시설, 양식자재(부자에 한함) 생산시설</li> </ul>	<p>○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p> <p>○대청댐이 광역상수도의 수원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적으로 오염을 방지하고 적극 보호하여야하므로 환경과 공장설립의 조화가 불가능함</li> <li>· 규제지역이외에 대해서는 계속 공장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음</li> </ul>	<p>농림수산부 (농촌소득과)</p> <p>건설부 (도시개발과)</p>	



(청원군)

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8. 문민시대에 걸맞게 청남대 개발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남대는 국가 주요시설로서 '88. 5. 26 국가보안 목표 '가' 급으로 지정되어 시설의 보안 및 유지관리상 완전개발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됨.</li> <li>※ '94. 4. 4대통령 비서실(청남대)에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민정부 출범이후 보안관리구역 기축소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 : '93. 4. 10</li> <li>-내용 : 시설외부(4km)→시설내부(경내)</li> <li>-사유 : 인근지역 주민들의 영농과 임야 관리 편의제공</li> </ul> </li> <li>· 대통령 비서실(청남대)과 협의결과 기축소 조정이상의 개방은 보안상 어렵다 함.</li> </ul>	<p>대통령비서실(총무수석비서실)</p>	

(보은군)

측산 실과. 측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1. 회남면~회남대교간 낚시터 지정하여 각종 편의시설(화장실, 쓰레기장등) 설치</p>	<p>· 대청호 수면주변이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낚시터 허가에 필요한 각종 시설설치가 곤란함</p>	<p>· 낚시업 허가기관인 보은, 옥천군의 낚시터 설치 적지선정후 주민의 참여 및 운영 계획등을 검토후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 협의 추진</p>	<p>수 산 청 (자원조성과) 수자원공사</p>	

(보은군)

축산 실과 수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2. 농민은 영농자금을 받고 있으나 어민은 영어자금 받을 수 없으므로 생활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에는 수협이 없고 수협 충남도지회(소재지:대전)에서 충북일원을 관할하고 있음</li> <li>양식어민은 충남도지회에 개별로 신청, 일부 영어자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수면어로어민은 대부분 1톤미만의 소형어선을 소유한 영세어민으로 영어자금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수협충남도지회에 문의한 결과 내수면어로어민에 대한 영어자금은 어구구입비 정도에 소액지원됨으로 충남에서도 지원실적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청 및 수협중앙회에 내수면어로어민도 희망자는 영어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것을 건의</li> </ul>	<p>수산청 (협도조합과)</p> <p>수산협동조합중앙회</p>	

(보은군)

주택 실과·주택2 개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3. 수몰당시 임야등에 이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증·개축을 할 수 없으니 주택지에 대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토록 조치요망</p>	<p>· 건축당시 행정절차(임야→산림훼손허가농지→농지전용허가등)이행하지 않고 주택을 신축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실정임.</p>	<p>· 주택15650-1134('93. 10. 4)호에 의거 담수몰 이주민 주택부지 지목변경 처리지시 -본인이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하에 대하여는 시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목변경을 추진토록 조치하였음</p>	<p>주택과</p>	<p>해결</p>

(보은군)

도시개발실과 개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4. 축사등 보속시설 설치토 록 건축규제 해제요망	· 댐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지목상 대지에서만 건축할 수 있으므로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도 대지이외의 지목에서는 거의 불가 능한 실정임	·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도 오폐수처리시설 이 완비 되었으면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개 정('94. 4. 6일 환경처 관계법령 입법 고중)	환경처	

(보은군)

도로 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5. 보은~거교리(어부동)간의 도로 확·포장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사업비 확보지안</li> <li>&lt; 현황 &gt;</li> <li>- 노선명 : 거교 ~ 도율선(군도214호)</li> <li>- 사업량 : L=14.9km</li> <li>- 소요사업비 : 7,246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도정비계획에 따라 년차별 사업시행</li> <li>※ '94시행</li> <li>- 사업량 : L=3.0km</li> <li>- 사업비 : 6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비 : 300백만원</li> <li>- 군비 : 300백만원</li> </ul> </li> </ul>	내무부 (지역개발과)	

(보은군)

축산 실과 수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6. 경제성 있는 토산메기등 대청호에 방류 요망 (신종어종인 준치에 의해 기존 물고기가 멸조위기에 있으니 수산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책강구)</p>	<p>&lt; 없음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년도부터 치어매입방양 사업의 구입어종을 시·군에 위임, 어민의 의견을 수렴어종을 선택토록 하고 있음</li> <li>- '94 계획 : 940천미 (어종 - 잉어, 향어, 메기, 뱀장어)</li> <li>- '93 실적 : 1,879천미 방양 (잉어류 : 1,763 메기 : 60 뱀장어 : 57)</li> </ul>		

(보은·옥천군)

축산 실적 수산계

건의내용	문제점	추진실적및대책	소관부서	비고
<p>7. 가두리양식장 이업면허 연장허가가 되지 않아 생계지장 초래·연장요망 (가두리 양식장 허가와 유료낚시터 허가는 소수 개인보다는 공동이익이 되도록 댐주변 부락에 공동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두리양식업면허기간 연장허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환경처 고시 제15, 16호('90. 9. 17)에 의거 내수면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연장허가가 금지되어 있음</li> <li>· 본도에서는 가두리양식장 시설물 일부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환경처 고시 완화를 건의('93. 7. 2)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기간 만료 후 육상양어장 이설 권장 및 지원</li> <li>-현재 : 1개소당 140백만원 용자지원</li> <li>-개선 : 사업비 중 보조금 반영건의</li> </ul>	<p>수산청 (자원조성과)</p>	



(보은군)

치수 실적 이수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8. 유람선 건조 및 운항지원		· 유람선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불편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원불가	수자원공사	불가

(보은군)

환경관리실과, 청소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9. 삼조식 변소설치 사업비 지원 (4개소 200백만원 : 개소당 4평기준 500만원)</p>	<p>· 현재 우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 불량화장실 개량 사업으로는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당 500만원규모의 삼조식 변소 설치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p>	<p>· 참고로 공중변소사업은 환경관리과(청소계)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환경관리과 (시·군)</p>	

(보은군)

환경관리 실과 청소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0. 오물제거 장비 지원 : 624백만원 -쓰레기 차단망 설치 (서탄리등) -쓰레기 제거선 건조 (1척 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청댐 유역에서 우기시 일시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나 인력, 장비 부족으로 적기에 수거처리되지 않아 대청호의 부영양화 현상 발생 및 수질악화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의 주요 유역에 쓰레기유입 방지를 위한 쓰레기 차단망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홍수기때 일시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차단망이 유속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향후에 유입지천별로 선별 설치계획임</li> <li>수자원공사에서 댐내 유입된 부유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홍수기 이전에 부유물 전용 선박(5톤) 1척을 미국에서 건조 6월중에 도입하여 상시 부유물을 제거할 것이며 향후 운영중에 부족할 시 추가 건조 도입예정</li> </ul>	수자원공사	

(보은군)

축산 실과 수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1. 부락공동 육상양어장 시설자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10개소, 2,500백만원)	양식장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주민들의 운영방법등에 대한 적합여부의 사전 검토가 되지않고 있음	보은군과 협의하여 주민의 사업계획 내용 검토후 수자원공사에 시설자금 지원요청	수산청 (자원조성과)  수자원공사	

(옥천군)

축산 실적 수산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1.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 ('83~'93) 연장허가가 되지 않아 생계지장초래 연장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환경처 고시 제15, 16호('90. 9. 17)에 의거 내수면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연장허가가 금지되어 있음</li> <li>· 본도에서는 가두리양식장 시설물 일부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환경처 고시 완화를 건의 ('93. 7. 2)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기간 만료 후 육상양어장 이설 권장 및 지원</li> <li>-현재 : 1개소당 140백만원 용자 지원</li> <li>-개선 : 사업비 중 보조금 반영 건의</li> </ul>	<p>수산청 (자원조사과)</p>	

(옥천군)

치수실과 이수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2. 댐주변 도선(10척) 교체 및 수리비지원 요망 (도선 10척중 우선 5척만이라도 건조지원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선 내구연한 조정 및 도선 옥천9호 나침반 설치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옥천군 도선 10척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원금” 29,700천원을 확보하여 '94. 3. 19~4. 30까지 엔진교체, 선체보 보수등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완료.</li> <li>· 이후 도선의 교체는 현지 실정 및 선박상태를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li> <li>· 유·도선의 법적 선령은 구 유·도선입법에 FRP선박은 15년이었으나 '94. 1. 1개정 시행된 유·도선사업법에 선령을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도록 하였음. 옥천군 도선은 개인소유가 아닌 마을공동소유로 육상에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쉽게 노후되고 있음.</li> <li>· 도선 옥천9호 계류지를 '94. 6. 12 방문 하였으나 도선 관리자를 만나지 못하여, 옥천군에서 관리자와 협의하여 나침반을 설치토록 하였음.</li> </ul>	<p>건설부 (댐계획과) 수자원공사</p>	

(옥천군)

예산 실과 예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3. 대청댐 주변 낚시터 조성 으로 주민소득 기여토록 조치</p>	<p>·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내 낚시터설치 에 대한 수면사용 승인 거부 (수질환 경오염 사유) ※ '91년도 옥천군 자체 낚시터 개발 계획에 따라 대청댐내 낚시터 설치 수면사용 협의시 수자원공사에서 미승인</p>	<p>· 낚시업 허가기관인 보은, 옥천군의 낚시 터 설치 적지선정후 주민의 참여 및 운영 계획등을 검토후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 용 협의 추진</p>	<p>수 산 청 (자원조성 과)  수자원공사</p>	

(옥천군)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4. 옥천쓰레기 매립장이 '93년 만료되므로 신규매립장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 (2,300백만원)</p>	<p>· 폐기물관리구역의 확대 및 산업체 일반 폐기물의 발생 증가와 기존매립장이 재래식일 뿐 아니라 포화상태로서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이쓰나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어 지방재정상 예산확보어려움</p>	<p>·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비 및 용지보상비를 위한 군비 596백만원 확보하였으나 시설을 위해서는 3,34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중 50%인 1,670백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처에 요청 ('94. 1. 11)</p> <p>· 국고보조율이 높게 조정될 것에 대비 (국70 : 지방30)하여 단독매립장으로도 환경처에 재차 요청계획임.</p>	<p>환경처 (기획예산담당관)</p>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5. 대청댐 구역내 골재 채취                      사용료 전액 군수입 조치                      요망</p>	<p>· 특정 다목적댐법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                      사에 관리권(허가, 사용료수입)을                      사할 수 있도록 규정</p>	<p>· 댐구역내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에게 허가 및 징수에 관한 업                      무를 위임한 경우 그 징수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골재채취 사용료 전액을 군수입으                      로 조치는 불가함</p> <p>· 다목적댐 저수지 및 유희관리규정 제8조                      (건설부령)</p>	<p>수자원공사</p>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6. 대청댐주변 쓰레기등 오물처리대책 :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 쓰레기 책임수거 조치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잡초제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댐부유물 처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댐 내 부유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제거, 유역내(육상)쓰레기는 해당 군에서 처리하고 있어 행정적인 협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에서 댐내 부유물을 제거하여 육상에서 적재하여 높은 쓰레기는 해당 군에서 적기에 처리해야 하나 인력, 할 장비 부족으로 적기에 수거처리 못할 경우 다시 댐내로 부유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음</p>	<p>· 건설부의 댐내 부유물처리 대책시달 ('88. 6. 21)에 의거 댐내 부유물(가시권내 포함)은 수자원공사, 유역내(육상)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토록 시달되어 현재까지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나</p> <p>· 댐내(가시권 포함)의 부유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수거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p>	<p>환경처 (수질정책과) 건설부 수자원공사</p>	

(옥천군)

도시계획, 환경관리, 관광 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7. 신규관광지(종합휴양업) 개발제한으로 지역발전 저해  종합휴양업 입지승인이 불법저촉사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처리되고 있음</p>	<p>· 환경처로부터 동지역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대청호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협</p>	<p>· 환경전문회사에 의뢰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저감하는 방안으로 대진지방환경처와 재협의 후 관광지(종합휴양업) 개발 추진</p>	<p>환경처</p>	

(옥천군)

축산 실과 수산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8. 산란기 빙어 남획방지 지도 및 빙어 번식 방안 (옥천군 이원면 청천 저수지에 빙어산란기가 되면 터널하천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소상회하고 있어 빙어자원보호에 문제점이 많으니 터널입구에 철조망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옥천군에 '95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적극 추진토록 지시</p>	수자원공사	불가

(충주시)

도로 실과 시설2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 상요객 및 지역개발근본 대책으로 재오리~목벌 남벌간 이설도로개설요망	· 소요사업비 확보지난  < 현 황 > -노선명 : 충주 ~살미선(군도610호) -사업량 : L=21.2km -소요사업비 : 9,933백만원	· 군도정비계획에 따라 년차별 사업시행  ※ '94시행 -사업량 : L=1.2km -사업비 : 745백만원	내무부 (지역개발 과)	

(충주시)

치수실과 하천계

건의내용	문제점	추진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2. 댐건설로 강수욕장 상실 되어 대체시설 설치요망		· 강수욕장 조성 완료 -규모 : 54,450㎡ -사업비 : 500백만원 -기간 : '92 ~ '93 -시행자 : 충주시	사회진흥과	완료

(충주시)

환경관리, 도시개발실과 청소, 상하수도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3. 충주시 상수원인 달래강 오염방지를 위한 오물처리 시설비 국고지원</p>	<p>· 충주시 상수원인 달래강 주변에 하절기(4~10월)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쓰레기 등 오물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역이 광범위하여 지도·단속 및 오물처리가 어려움)</p>	<p>· 충주시 상수원인 달래강 주변에 사람이 많이 찾는 하절기(4~10월)에는 쓰레기 등 오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롤온박스를 양쪽으로 2대 설치하여 수시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청원경찰 2명을 오물투기 지도, 단속요원으로 고정배치</p>	<p>도시개발과</p>	

(충주시)

도시개발 실적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4. 보조댐 수위상승에 따른 상수도시설 대책	· 보조댐의 수위상승으로 지하수위가 높아져 간이식수원 오염	· 지방상수도사업 시행으로 식수난 해결 -급수구역 : 달천동, 상요관, 두담하용두 만정리일원 -급수해택인구 : 5,000명정도 -소요사업비 : 7억 -사업기간 : '94. 5 ~ '94. 11	도시개발과	



(충주시)

도시개발 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5. 충주시 배수펌프장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배수펌프장은 '90년에 집중호우로 충주의 봉방일대 저지대가 침수되어 수해복구사업으로 우수의 배제를 목적으로 배수펌프장이 건설된 이후 연간 175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관리되어 왔음</li> <li>· 청주에도 우암배수펌프장이 가동되어 17,428천원의 예산으로 운영관리되어 오고 있음</li> <li>· 충주지역의 봉방배수펌프장은 강우시에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타시·군도 배수펌프장의 운영관리는 전액 해당 시군예산으로 조치되고 있어 충주지역에 별도로 예산조치가 되는 것은 어려움</li> </ul>	도시개발과 (시·군)	

(중원군)

도로 실과 시설2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 중원 설운~금성(동량 미라실)간 이설도로 개설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사업비 확보지난</li> <li>&lt; 현황 &gt;</li> <li>- 노선명 : 설운 ~ 금성선                (농어촌도로 면도)</li> <li>- 사업량 : L=13.0km</li> <li>- 소요사업비 : 5,98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년차적으로 사업                시행('97년부터 계획)</li> </ul>	내무부 (지역개발 과)	

건의내용	문제점						소관부서	비고	
2. 충주호가 국민관광지로 개발촉진토록 대책요망 (지방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연구검토)	· 댐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						건설부		
	구분	용도지역							비고
	계	자연환경	농림	준농림	준도시				
	계	1,885,000	-	713,615	1,141,385	-			
	물태지구	523,000	-	165,137	357,863	-			
	계산지구	234,000	-	34,978	199,022	-			
	탄지지구	295,000	-	149,148	145,852	-			
	농강지구	439,000	-	139,352	299,648	-			
서운지구	364,000	-	225,000	139,000	-				
2. 문제점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관광휴양시설입지 지난 -건설부에서 충주호수질(현재Ⅱ급수)을 Ⅰ급수로 상향조정 한 후 수질개선추세에 따라 '94 이후 재검토 회시 -각종개발규제강화로 인한 지역개발사업 지난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지사권한 위임사항이 1km <sup>2</sup> (30만평)이하로 되어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8조) 환경문제등 관련부서 협의절차는 동일하므로 변경 추진 지난									

건의내용	추진실적및대책	소관부서	비고
	<p>○ 현 용도지역상 개발가능한 대상사업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지역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산림법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 → 관광농원, 자연휴양림(산림법 제31조)</li> <li>· 준농림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층-3층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li> <li>※ 일반건축물 보일러 유류사용량년간 500톤 이하</li> <li>-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li> <li>- 면적이 3만㎡ 이하의 토지형질변경과 부지면적이 3만㎡ 이하인 시설건축물</li> <li>→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3만㎡ 이하 부지내 관광휴양시설</li> </ul> </li> </ul> <p>○ 관광지개발 국토이용계획변경 불가능시 관광개발추진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휴양관광농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한 관광개발 잠재력이 있는곳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래방객의 유치가 용이한 지역</li> </ul> </li> <li>· 개발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개발로 주거환경, 생활환경 개선</li> <li>- 농촌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의 관광자원과 조화있는 전원관광마을조성</li> <li>- 지역특산물개발, 명품화하여 관광상품 생산판매</li> <li>- 주말입대 농장조성으로 휴식과 함께 일하는 관광 공향마을조성</li> <li>- 전통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회관, 자연학습장등 휴양단지조성</li> <li>- 마을전체 집합오수 정화시설 설치로 환경오염방지 철저</li> </ul> </li> </ul> </li> <li>2. 자연경관 정화구역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려한 산간계곡의 자연발적생 유원지에 정화구역을 지정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정화 관리운영</li> <li>· 관광진입도로 유료주차장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용차량 증가에 따른 자가용차량 관광여행패턴 증가에 대비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발생적 유원지에 자동차야영이 가능한 유료주차장을 건설, 운영하여 세수증대</li> </ul> </li> <li>· 개발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군수 주체하에 농민단체, 지역주민 공동개발</li> </ul> </li> </ul> </li> </ol>		

(중원군)

치수 실적 이수계

건의내용	문제점	추진실적및대책	소관부서	비고
3. 삼탄지역 댐고수부지 및 가금체육공원 주변 주차 장부지 무상사용 요망		· 수자원공사와 협의중('94. 3. 25)	수자원공사	추진 중

(중원군)

치수실과, 하천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4. 댐방류시 피해가 많은 동량용대 및 가금창동 지역 제방 축조, 배수펌프장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펌프장 설치계획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대, 창동제방은 한강수계 치수사업으로 건설부에서 계획수립중('94상반기 실시 설계완료)</li> <li>· 배수장설치는 건설부에 건의할 계획임.</li> </ul>	건설부 (하천계획과)  대전국토관리청	

(중원군)

치수 실적 이수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5. 충주호반에 돛대유람선을 운행하도록 계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수조절등 댐운영관리상 불허 (수자원공사 댐경영 13131 - 1184 '93. 10. 23)</li> <li>· 충주칠금지구에 유람선운행을 계획하였으나 수자원공사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제천교리지구도 환경영향평가시 제척되었으며 향후 조성계획변경시 제천교리지구의 충주칠금지구도 유람선이 운행할 수 있도록 재협의 요청</li> </ul>	수자원공사	불가

(중원군)

치수실과 하천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6. '90년 충주댐 수몰선조정에 따라 단양군지역은 보상되었으나, 중원군지역 미보상지역의 보상대책 및 조정지댐 만수시 최고 수위가 수몰선이상 상승으로 농경지 및 가옥 침수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p>	<p>· 추가보상근거 미흡</p>	<p>· 단양군지역은 '90년 충주댐 수몰선 조정으로 추가편입보상 -기준 : 배수위 계산결과 기보상선언 E.L 145M에서 100M 상회지역 -대상 : 단양군 중령천 합류상류</p> <p>· 이타지역 수해복구비 지원</p> <p>·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계획함.</p>	<p>건설부 (댐계획과) 수자원공사</p>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7. 조정지댐의 가금면지역 농경지는 잘떨어지는 흩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 농경지가 계속 유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농경지경계 호안 설치 사업을 요구하고 진척사항을 수시보고 바람)</p>	<p>· 현황            -위치 : 가금면 누암리 97번지            -지목 : 전            -지적 : 1,475㎡            -소유자 : 충주시 교현동 228-6 양성연</p> <p>· 문제점            -조정지 댐부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수면과 50CM정도 고차를 이루고 있으며, 토질은 미립세사(보명개)로 파랑에 의하여 유실되고 있음            -유실정도 <math>T = 30M</math> 정도</p>	<p>· 경계에 호안설치필요  <math>L = 190M</math>, <math>H = 5M</math>            -소요사업비 : 2,400백만원</p> <p>· '94. 4. 27            댐관리기관인 한국사자원공사에 처리토록 통보</p> <p>· '94. 5. 21            -한국사자원공사 처리결과 회신            □ 현지조사 및 측량 결과 유실부분은 파랑등을 고려 여유로 보상한 구역임            금년 홍수기 후 조정지댐 연안 면밀 조사 후 필요시 대책 검토 예정</p>	<p>수자원공사</p>	

(중원군)

도시개발실과 상하수도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8. 충주댐 광역 상수도 사업 사업비 전액 국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정수장시설비 시·군부담가중</li> <li>· 자치단체 수수시설비 소요가 막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정수장 건설비의 지방비분담은 '93정기국회에서 부담방침 결정</li> <li>· 자치단체의 수수시설비 절감과 수수시설에 대한 중앙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li> </ul>	건설부 (상수도과)	

(중원군)

치수 실과 방제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9. 하검단리 이주대책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앞 축조된 제방보다 낮음</li> <li>-조정지댐 수위상승시 역수현상 초래</li> <li>-마을침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정주권개발사업계획 반영추진집단</li> <li>-취락마을 지정 (주택, 건축등일괄추진)</li> <li>-피해예산 세대수(26가구, 83명)</li> <li>-소요사업비 : 3,030백만원</li> <li>· 향후계획</li> <li>-'94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지구임 (내수 침수 3등급)</li> </ul>	<p>내 무 부 (방제과)</p>	

(중원군)

도로 실과 시설 2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0. 하점단교 상승설치요망 < 현황 > -노선명 : 수회 ~ 창동선 (군도 609호) -사업량 : L=140M -소요사업비 : 930백만원	· 소요사업비 확보지난	· 군도 중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사업 시행 ※충주시와 중원군의 경계에 위치, 양시군에서 사업비 부담 협의중	내무부 (지역개발과)	

(제천군)

지역계획실과 지역기획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1. 충주호 명칭을 청풍호로 개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댐의 위치불분명 및 지명도 훼손</li> <li>· 고유명칭 변경으로 관광객들에게 혼선 유발, 관광객 감소초래</li> <li>· 개칭시 지역이기주의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시군 의견 수렴결과</li> <li>&lt; 찬성 &gt; -2개시군(제천시·군)</li> <li>&lt; 반대 &gt; -3개시군(충주시, 증원, 단양군)</li> </ul>	건설부	

(제천군)

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2. 댐수몰 보상시 1차 감정 가격으로 3차년도 보상으로 인한 피해보상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댐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81. 8. 3 ~ '85. 9. 30 (수몰선에 따라 6차로 구분)</li> <li>-방법 :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충주댐수몰대책사무소에서 보상 ('79. 1. 8 개시 → '85. 9. 30 폐쇄)</li> </ul> </li>   <li>· 금성면 중전리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83. 5. 19 ~ '84. 10. 10</li> <li>-대상 : 134명 428필지</li> <li>※ 타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기가내 보상 완료되었음</li> </ul> </li> </ul>	수자원공사	

(제천군)

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3. 댐 유희지를 경작농가에 매각 조치		· 수자원공사와 협의중 ('94. 3. 25) · 현재로서는 매각계획 없음	수자원공사	추진중

(제천군)

관광, 도시계획, 환경관리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4. 관광개발은 여건이 좋은 지역을 부분적으로 우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지 보완개발 활성화</li> <li>-교리지구 : 민자유치 촉진</li> <li>-청풍지구 : 문화재단지 주변정리 및 시설보강</li> <li>-2단계 사업지구중 여건이 좋은곳부터 우선추진(물태, 농경지구)</li> </ul>	<p>건설부 환경처</p>	



(제천군)

세정 실적과 세정 계획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5. 도세징수 교부금을 담면적비율로 시군에 교부	·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징수금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처리비로 지급토록 지방세법 시행령 4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여러차례 교부율 인상 (30%→50%)을 건의 하였으나, '93. 12. 31 현재 교부세율로 확정되므로서 또다시 세율인상건의는 지난함.	내무부 (세정과)	

(제천군)

도로 실과 도로보수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6. 충주호 주변 이설도로에 위험방지시설 설치요망</p> <p>※총대상 · 지방도 -선형개량 13개소 -낙석방지 9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개소</p> <p>· 소요사업비 : 3,653백만원</p>	<p>· 소요사업비 확보지난</p>	<p>·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시행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부터 우선시행)</p> <p>'94시행 -낙석방지망시설 1개소 : 60,000천원 -미끄럼방지시설 1개소 : 13,000천원</p>	<p>내무부 (지역개발과)</p>	

(제천군)

도로 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7. 옥순대교 가설	· 사업비 : 90억 H = 60M  ※ 담수하기 전에 다리를 건설하여야 하나 물을 다시 빼고 할 수 없는 문 제이므로 문제점 노출	·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됨.	내무부	불가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8. 월악 선착장 ~ 덕산봉화대 간의 도로개설 요망</p> <p>&lt; 현황 &gt;  -노선명 : 월악 선착장 ~ 덕산 봉화대 (농어촌도로 리도)  -사업량 : L=7.0km  -소요사업비 : 3,500백만원</p>	<p>· 소요사업비 확보지난</p>	<p>·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사업시행</p> <p>※ '94시행  -사업량 : L=1.5km  -사업비 : 500백만원  1. 도비 250백만원  2. 군비 250백만원</p>	<p>내무부 (지역개발과)</p>	

(단양군)

지역계획  
치수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1. 별곡 4단지 개발요망 (별곡 4단지 개발은 우선 5만평 정도라도 개발되 도록 건설부에 건의 바 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댐담수구역으로 중앙하천심의위 원회에서 부결(담수구역 축소불가)</li> <li>· 백워터 지역으로 수해위험이 상존하 는 지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수과 및 단양군에 통보('94. 5. 23)</li> <li>-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li> <li>※처리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 로 재검토하여 건설부에 건의할 예정 임.</li> </ul>	<p>건설부 (하천계획 과)</p>	

(단양군)

치수실과 하천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2. 수중보 설치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중보설치시 수위110M 아하고 배수 하여야 하므로 댐본래기능 상실</li> <li>· 갈수기에만 공사시 공기가 장기간 (약12년) 소요되고 막대한 공사비 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공사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충주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등 다목적댐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li> <li>· 수중보 설치 타당성 자료확보를 위한 용역요구 검토</li> </ul>	건설부 (댐계획과) 수자원공사	

(단양군)

도로 실과 시설2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3. 상진교~고수간 도로보수</p> <p>&lt; 현황 &gt; -사업량 : L=3.600M -소요사업비 : 700백만원</p>	<p>·홍수시 수위상승으로 도로유지 지남</p> <p>·소요사업비 확보지남</p>	<p>·수위하강시 주민통행이 가능하도록 년차적으로 보수</p> <p>※'94시행 -사업량 : L=1.100M -사업비 : 100백만원</p>	<p>내무부 (지역개발과)</p>	

(단양군)

치수 실과 이수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4. 유희고수부지 시·군재산 으로 환원		· 수자원공사와 협의중 ('94. 3. 25)	수자원공사	



(단양군)

도로 실과 시설2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5. 적성~단성간 장대교가설  < 현황 > -사업량 : L=460M -소요사업비 : 8,000백만원	·소요사업비 확보지난	·적성~단성간 장대교사업계획을 내무부에 보고하였음. ('93. 2. 25 보고)	내 무 부 (지역개발과)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p>6.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지원(서울시) 등 수혜자인 하류지역에 부담시키는 방안 강구</p>	<p>· 하수종말 처리장은 전국적으로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국비보조와 지방비(원인자부담)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비를 서울시등에 부담시키는 어려움</p>	<p>·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면 강 하류지역(인천, 군산, 목포, 부산등)에서 상류지역전체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므로 실현불가능하며, 미국, 일본등 선진외국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는 지방에서 하수도사용료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음</p>	<p>환경처 (하수종말 시설과)</p>	

(단양군)

도시개발실과 계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7. 신단양읍 계획도시로 계속 발전토록 지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 2. 21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담삼봉앞 도전리지구의 체계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li> <li>· 군부대이전지역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자유치 개발</li> <li>-정부지원 확대</li> </ul> </li> <li>· 유원지로의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자유치</li> </ul> </li> </ul>	건설부 (도시정비과)	

건의 내용	문제점	추진 실적 및 대책	소관부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 진안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검토, 구체적인 대책(개선방안) 마련</li> <li>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우려되는 본도 인접 군민의 식수난 대책</li> <li>대청호 하류 유속 변화와 토사적체로 용수가 막히고 생태계가 변화될 우려에 대한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역완료 시기 미도래</li> <li>초당 5톤의 용수배분계획을 10톤(영동지역 갈수기의 초당 평균 유량은 10.5톤)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용수량 감소(10.5 → 5톤)으로 인한 자생능력의 문제점 해소와 초당 10톤의 용수 배분을 제도적(법적)으로 보장받는 조치</li> <li>용담댐 화류(영동, 옥천)의 기초환경 시설비와 시설관리 운영비 국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담댐 건설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하천유지 용수량이 증가(1.2m<sup>3</sup>/sec → 5.0m<sup>3</sup>/sec)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li> <li>댐 하류에 대한 영향검토를 별도용역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93. 9. 17 ~ '94. 12. 15</li> <li>-용역자 :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충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li> </ul> </li> <li>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향검토 용역기관에 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건의예정</li> <li>-용역결과에 따라 대책강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부 (댐계획과)</li> <li>수자원공사</li> </ul>	